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2.8.28] [국무총리훈령 제591호, 2012.8.28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설립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) ① 국립무형유산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(이하 " 추진단 " 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립무형유산원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2. 국립무형유산원의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
3. 국립무형유산원의 장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
4. 국립무형유산원의 공연 · 전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5. 국립무형유산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6. 무형문화유산 기록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
7.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실무작업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추진단의 단장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.

③ 추진단의 팀원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 ·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며, 실무작업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단장의 직무) ①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작업팀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관계기관 등에의 업무협조 요청)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·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조사 · 연구의 의뢰)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· 단체 등에 조사 ·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 ·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 추천) 문화재청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보수 등)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.

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<제591호,2012.8.28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설립되어 업무를 개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